##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

발의연월일: 2024. 5. 20.

발 의 자:박 정·정성호·어기구

김병기 · 김병주 · 임오경

안규백 · 김정호 · 윤후덕

허 영·박홍근·장경태

박지혜 · 민병덕 · 강유정

소병훈 • 송기헌 • 윤호중

의원(18인)

## 제안이유

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.

그러나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더 빠르고, 더 나아가 지역소멸 위기까지 걱정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.

행정안전부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89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있는데, 이 중 군단위 지자체가 72개고,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,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 51곳 중 군 단위 지자체50곳, 읍면동은 1,173개에 이르고, 소멸 위험 진입 지역 26곳이 군에해당하며, 읍면동은 77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구소멸 위기 지역은 대다수가 농어촌지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.

이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 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방지하고자 함(안 제4조제6항 신설). 법률 제 호

##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주소지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또는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인 경우 그 아동에게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금액에 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	제4조(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
지급액) ① ~ ⑤ (생 략)	지급액) ① ~ ⑤ (현행과 같
	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의
	주소지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
	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
	따른 농촌 또는 「수산업·어촌
	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
	따른 어촌 지역인 경우 그 아
	동에게 제1항 및 제5항에 해당
	하는 금액에 더하여 해당 지방
	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
	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